

Ⅰ 산업간호와 법 Ⅰ

노동부령 제2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조의2(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7. (생략)</p> <p>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p> <p>9. (생략)</p> <p><u>제15조의6(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3조의2(협조요청) _____</p> <p>_____.</p> <p>1.~7. (현행과 같음)</p> <p>8. _____ 자료 _____</p> <p>9.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 18 조 (안 전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신 청 등)</p> <p>① _____</p> <p>_____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_____,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5. (생략)</p> <p>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1.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수</p> <p>2.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p> <p>3. 사업계획의 타당성</p> <p>③~⑤ (생략)</p> <p>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등)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대행계약 및 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본다.</p> <p>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등)-----제15조의5-----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 -----</p> <p>제 21조 (보 건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신 청 등) ①-----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p> <p>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7. (생략)</p> <p>② (생략)</p> <p>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52조 내지 제78조·제92조 내지 제94조·제149조 내지 제152조·제154조 내지 제156조·제160조(영 제2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한한다)·제183조 내지 제185조에서 정한 기준</p>	<p>1.~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p> <p>①-----</p> <p>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 내지 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2.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④ (생 략)</p> <p>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p>1. 2. (생 략)</p> <p>3. <u>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u></p> <p>4.~12. (생 략)</p> <p>13. <u>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 취급·제조 특별장소</u></p> <p>14.·15. (생 략)</p> <p>⑥ (생 략)</p> <p>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u>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안전난간</u>-----</p> <p>4.~12. (현행과 같음)</p> <p>13. <u>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u></p> <p>14.·15.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자 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 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p>

현행	개정안
<p>1.~4.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생략)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3. (생략)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1.~5. (생략) ②·③ (생략)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p>
<p>1.~6. (생략) ② (생략) <신설></p>	<p>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생략) 제59조의10(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게 안전인증제품이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 규격 및 제</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 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성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현행	개정안
<p>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6.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제72조의3(등록신청 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1.~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3조(자체검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프레스 및 전단기</u> 2. <u>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u> 3. <u>리프트</u> 4. <u>곤도라</u> 5. <u>승강기</u> 6. <u>원심기</u> 7. <u>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정장치</u> 8. <u>보일러</u> 9. <u>압력용기</u> 10. <u>공기압축기</u> 11. <u>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u> 12. <u>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u> 13. <u>국소배기장치</u> 14. <u>로울러기</u> 	<p>1.~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72조의3(등록신청 등)</p> <p>①----- ----- <u>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p> <p>---. 다만,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3조(자체검사)</p> <p>①----- -----</p> <p>---<u>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동력프레스</u> 2. <u>전단기</u> 3. <u>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u> 4. <u>리프트</u> 5. <u>곤돌라</u> 6. <u>승강기</u> 7. <u>원심기</u> 8. <u>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u> 9. <u>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u> 10. <u>보일러</u> 11. <u>압력용기</u> 12. <u>공기압축기</u> 13. <u>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u>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항목 및 주기·검사결과와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영·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③ (생 략)</p> <p>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5. (생 략)</p> <p><신 설></p> <p>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와 신고 및 표시 등 제1절 제조 등의 허가</p>	<p>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p> <p>15. 국소배기장치</p> <p>16. 로울러기</p> <p>②사업주는 별표 10의3에 규정된 검사주기 및 검사내용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p> <p>제2항의 규정</p> <p>----- -----</p> <p>④-----</p>

현행	개정안
<p>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 등) ① (생략)</p> <p>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조·사용설비 등이 <u>보건규칙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여부</u></p> <p>3. (생략)</p> <p>제2절 <u>유해물질의 표시</u></p> <p>제81조의4(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11장 <u>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u></p> <p>제92조의4(경고표지의 부착)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경고표지</u>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p> <p>-----</p> <p>-----</p> <p>-----</p> <p>제10장 <u>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u></p> <p>제1절 <u>제조 등의 금지·허가</u></p> <p>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각호</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56조</u>-----</p> <p>3. (현행과 같음)</p> <p>제2절 <u>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u></p> <p><삭제></p> <p>제11장 <u>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u></p> <p>제92조의4(경고표지의 부착)</p> <p>①-----<u>경고표지</u>-----</p> <p>-----</p> <p>-----<u>용기 및 포장</u>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삭제></p> <p>2.~6. (현행과 같음)</p> <p>②-----<u>경고표지</u>-----</p> <p>-----</p> <p>-----</p>

현행	개정안
<p>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p> <p>2.~6.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3. (생략)</p> <p><u>〈신설〉</u></p> <p>②~④ (생략)</p> <p>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채용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_____.</p> <p>③_____ 경고표시</p> <p>_____.</p> <p>_____.</p> <p>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p> <p>①_____</p> <p>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p> <p>_____.</p> <p>1.~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p> <p>①</p> <p>_____</p> <p>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p> <p>_____.</p> <p>1. _____</p> <p>_____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p> <p>_____</p> <p>2. _____</p> <p>_____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p> <p>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8조(정의)</p> <p>_____.</p> <p><u>〈삭제〉</u></p> <p>2. _____</p> <p>_____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p> <p>_____.</p>

현행	개정안
<p>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p> <p>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 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p> <p>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p> <p>라. 보건규칙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4알킬엔 등 업무</p> <p>마. 보건규칙 제1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업무</p> <p>바.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p> <p>사.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코우코스 제조 업무</p> <p>아. 보건규칙 제2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p> <p>자.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p> <p>차.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p> <p>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5. 6. (생략)</p> <p>제98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98조의3(건강진단 실시기관등) ① (생략)</p> <p>②사업주는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p> <p>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p> <p>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p>5. 6. (현행과 같음)</p> <p>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p> <p>① _____ 일반건강진단</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8조의3(건강진단 실시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일반건강진단</p> <p>_____「국민건강보험법」</p>

현행	개정안
<p>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이라 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입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p> <p>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중 제98조제3호다목 내지 사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N-디메틸포름아미드 : 배치후 1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2. 벤젠 : 배치후 2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3. 사염화탄소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염화비닐 및 아크릴로니트릴 : 배치후 3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4. 석면 : 배치후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유해물질 : 배치후 6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p>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삭 제></p> <p>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p>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현행	개정안
<p>④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중 제98조제3호가목·나목·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가목 및 나목(면분진이 비산되는 업무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무 : 배치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p> <p>2.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업무 및 면분진이 비산되는 업무 : 배치후 6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p> <p>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입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p> <p>2. (생략)</p> <p>⑦ (생략)</p> <p>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1. 국민건강보험법</p> <p>2. 항공법</p> <p>3. 삭제</p> <p>4.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한다)</p> <p>5. 삭제</p> <p>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p>	<p>한한다)</p> <p>〈삭 제〉</p> <p>⑤-----제98조제3호나목</p> <p>-----</p> <p>⑥-----</p> <p>-----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p> <p>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1.-----</p> <p>-----</p> <p>-----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입표"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p> <p>-----</p> <p>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p> <p>-----</p>

현행	개정안
<p>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신설〉</p> <p>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사진·촉진·청진 및 문건)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p>②·③ (생략)</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⑤~⑨ (생략)</p> <p>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제103조(지정의 신청)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_____</p> <p>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p> <p>제99조제3항 _____</p> <p>_____</p> <p>1. 2. (현행과 같음)</p> <p>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p> <p>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및 제3항 _____</p> <p>_____</p> <p>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삭제〉</p> <p>_____</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제2항 _____</p> <p>_____</p> <p>⑤~⑨ (현행과 같음)</p> <p>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 _____</p> <p>_____</p> <p>「국민건강보험법」_____</p> <p>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p> <p>① _____</p> <p>_____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p>

현행	개정안
<p><u>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인 이내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강진단·산업위생 등 산업보건관련기관의 전문가</u> <u>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자</u> <u>3. 노동부 및 기타 관계부처의 산업보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u> <u>4.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p><u>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공단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심위원회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u></p> <p>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u>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p> <p>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u>①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②·③ (생략) <p><u>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법 제4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베타-나프틸아민 및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u> <u>2. 벤지딘 염산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u> 	<p>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u>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u></p> <p>-----</p> <p>-----</p> <p>-----</p> <p>-----</p> <p>-----</p> <p>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u>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p><u>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업무와 대상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u></p>

현행	개정안
<p>는 업무</p> <p>3.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p>4. 비스-(클로로 메틸)에테르(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p>5.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 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p>6.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공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p> <p>7. 크롬산·중크롬산 및 이들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p>8. 삼산화비스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배소 또는 정제를 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p> <p>9. 제철용 코우크스 또는 제철용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한다)</p> <p>10. 베릴륨 및 그 화합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에 한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p>11. 보건규칙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진작업에 관계되는 업무</p>	
<p>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요건 및 절차) ①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제10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개월이상 종사한 자</p> <p>2. 제10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p> <p>3. 제10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p> <p>4. 제10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p> <p>5. 제10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p>	<p>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p>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hr/> <p>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p> <hr/>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받은 근로</p>

현행	개정안
<p>6. 제10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한 자중 양 폐야에 배럴룸에 의한 만성 결절성음영이 있는 자</p> <p>7. 제10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중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진폐의예방과친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제외한다)</p> <p>② (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u>〈신설〉</u></p> <p>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추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연·4알킬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p> <p>1.~5. (생략)</p> <p>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p> <p>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p> <p>8. (생략)</p> <p>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p> <p>10.~14. (생략)</p> <p>② (생략)</p>	<p>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수첩소지자</p> <hr/> <p>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p> <hr/> <p>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p> <hr/> <p>1.~5. (현행과 같음)</p> <p>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p> <p>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p> <p>8. (현행과 같음)</p> <p>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p>

현행	개정안
<p>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p> <p>1.~4. (생략)</p> <p>5.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p> <p>④ (생략)</p> <p>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u>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1.~5. (생략)</p> <p>② (생략)</p>	<p>10.~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p> <p>_____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_____</p> <p>1.~4. (현행과 같음)</p> <p>5. <u>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p> <p>① _____</p> <p>_____ <u>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_____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u></p> <p>3.·4. (생략)</p> <p>②~④ (생략)</p> <p>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p> <p>⑥·⑦ (생략)</p> <p>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제시) 법 <u>제51조제6항 단서</u>의</p>	<p>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p> <p>① _____</p> <p>_____ <u>각 호의 어느 하나</u> _____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u></p> <p>3.·4.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_____</p> <p>_____ <u>공단 또는 산업 안전·위생지도사에게</u> _____ .</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제시) — <u>제51조제6항 후단</u></p>

